

연구비 자체감사 내규

□ 제정 : 2012. 5. 4

□ 개정 : 2013. 3. 1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수원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이라 한다)의 연구비 중앙관리 행정체계의 확립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자체감사(이하“감사”라 한다)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범위)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연구비와 관련된 포괄적 감사를 포함한다.

제3조(감사의 종류) 감사는 상시감사와 특별감사로 하여 실시한다.

1. 상시감사는 연구관리 부서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예방 및 일상적 업무에 대해 수시 실시.
2. 특별감사는 제보자의 요구,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.

제4조(감사기관 및 감사위원 구성) ① 대학교의 연구비 감사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.

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, 감사위원은 대학교 소속 교수·직원 중에서 연구비 업무와 감사방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교 교수·직원 총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5조(감사방법) 감사는 서류 및 실사감사를 원칙으로 하되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감사만 할 수 있다.

제6조(감사결과 보고)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감사결과 처리) 상시 및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의 중대한 위반사실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비밀유지 의무) 연구비 감사에 참여한 감사위원과 감사를 받은자 및 감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9조(경비) 연구비 감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산학협력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.

제10조(세칙) ① 연구비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접수센터를 둘 수 있으며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